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